

# 학생회 회칙



중앙대학교 간호대학

# 1장 총칙

## 제1조 (명칭)

본회는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생회(이하 본회)라 한다.

## 제2조 (목적)

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과 창조적 비판적 학문 연구를 통하여 교시인 '의와 참'의 정신을 계승, 발전시키고 회원의 민주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여 대학 문화를 고양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3조 (회원)

본회의 회원은 본교 간호대학 재학생으로 한다.

## 제4조 (회원의 권리)

- 1)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 (단, 휴학 시 휴학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된다.)
- 2)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.
- 3) 회원은 각 선거직 임원이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할 수 있다.
- 4) 회원은 본회의 회원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.

## 제5조 (회원의 의무)

- 1) 회원은 대학 자치와 본회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수호해 나갈 의무가 있다.
- 2)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.

## 제6조 (구성)

본회는 제2조(목적)을 달성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총회,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, 간호대학운영위원회, 반학생총회, 반운영위원회, 집행위원회, 간호대학 동아리 연합회로 구성한다.

## 제7조 (특별기구)

- 1) 본회는 활동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.
- 2) 특별기구는 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대학생회장이 구성한다.

# 2장 간호대학생총회

## 제8조 (지위)

간호대학생총회(이하 학생총회)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.

## 제9조 (구성)

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한다.

## 제10조 (업무 및 권한)

- 1)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, 결정한다.
- 2) 학생총회는 간호대학생회장, 간호대부학생회장(이하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)의 탄핵 결정권을 가진다.

### 제11조 (의장)

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. (단, 학생회장 탄핵 소추 및 심판 시에는 본회 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공포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.)

### 제12조 (소집)

- 1) 학생총회는 간호대학운영위원회 및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 또는 회원 6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반드시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의장이 학생총회를 독자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.)
- 2) 학생총회의 소집과 상정안건은 집회 7일 전까지 의장이 공고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집회 3일 전까지 소집과 상정안건을 공고할 수 있다.)

### 제13조 (의결)

- 1)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1/8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.
- 2)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의 탄핵심판에 관한 학생총회는 간호대학운영위원회나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진행 아래,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) 총회를 할 수 없을 시에는 총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.

### 제14조 (탄핵심판)

- 1) 학생총회는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.
- 2)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 또는 학생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시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
- 3) 탄핵심판을 위한 학생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4) 학생총회에서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경우, 학생총회를 재소집하여 심판에 착수한다.
- 5) 탄핵심판에서 피소추인은 항변할 권리와 토론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.
- 6) 탄핵심판에서 소추인과 피소추인은 사안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증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증인은 탄핵심판장에 출석해 증인한다.
- 7) 모든 항변과 토론이 끝난 후 표결에 부친다.

## 3장 총 투표

### 제15조 (정의)

총 투표라 함은 본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안건에 대한 의사를 투표로 묻는 방식이다.

### 제16조 (목적 및 권한)

- 1) 총 투표의 목적은 본회의 모든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실현화하는 것이다.
- 2) 총 투표의 권한은 본회의 모든 회원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 방식이다. 회칙 안의 모든 의결 방식이나 단체보다 우선시된다.

### 제17조 (투표관리 위원회 정의 및 구성)

- 1) 투표관리 위원회는 총 투표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며, 총 투표와 관련된 업무 종료 시 자동으로 해체된다.

- 2) 투표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은 제34조(구성)에 명시된 구성원으로 한다.
- 3) 투표관리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. (단, 학생회장 탄핵 소추 및 심판 시에는 본회 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.)

### 제18조 (진행 방식)

- 1) 투표의 진행방식은 간호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. 또한, 새롭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오면 위의 제17조(투표관리 위원회 정의 및 구성)에서 그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.
- 2) 투표의 안건은 투표하기 최소 7일 전에 투표관리 위원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
- 3) 투표의 기간은 3일로 하며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에는 투표관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1회에 한해 2일을 연장할 수 있다.
- 4) 총 투표를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총 투표의 안건에 대해서 공지하고 총 투표에 관한 게시물을 만들어 본회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
### 제19조 (예산 및 감사)

- 1) 총 투표의 예산은 학생회비로 집행한다.
- 2) 투표관리 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된 날을 기점으로 10일 내에 심의회를 열어 결산안을 공개해야 한다.
- 3) 심의회 구성은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와 동일하게 한다.
- 4) 투표관리위원장은 심의회 5일 전에 의회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5) 심의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개된 회의이며, 투표관리 위원이 아닌 회원은 발언권을 신청하여 의결을 통해 발언할 수 있다. (단, 발언권 신청에 대한 의결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.)
- 6) 회원의 1/8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, 결산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해명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20조 (결과의 공고)

- 1) 총 투표를 완료되면 총 투표의 결과를 1일 이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
- 2) 총 투표가 성사되었을 시 결과에 따른 후속결과도 30일 이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

## 4장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

### 제21조 (지위)

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(이하 간학대회)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.

### 제22조 (구성)

- 1) 간학대회의 구성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간호대 학생 대표자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  - 가.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
  - 나. 반 대표자, 반 부대표자, 동아리 연합회장 (단, 동아리 연합 부회장이 있는 경우 포함)
  - 다. 학년 대표자, 학년 부대표자
- 2)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단위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 (단, 간학대회 개의 1시간 전까지 위임장을 통한 상급단위의 확인을 필한 위임자에 한한다.)
- 3) 간학대회의 모든 구성원은 의결권을 가진다. (단,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의결권은 중복될 수 없으며, 임시 학년 대표자의 경우 발언권만 부여되고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.)

### 제23조 (의장)

- 1)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대외적으로 간학대회를 대표한다. (단, 학생회장의 유고 및 결위 시 의장은 부학생회장이 맡는다.)
- 2) 본 회의의 진행은 부학생회장이 맡는다.
- 3)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유고 및 결위 시 개회 시작 직후 의결을 통해 집행위원회 인원이 진행을 맡을 수 있다.

4)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탄핵 소추를 위해 개의회는 경우 또는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간학대회의 의장은 간호대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시의장으로 한다.

## 제24조 (소집)

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.

- 1)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의장이 소집한다.
- 2) 임시회의는 재적 대표자 1/4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 (단,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의장의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.)
- 3) 의장은 대회 5일 이전에 대회를 공고하여야 한다.

## 제25조 (업무)

- 1) 본회 활동의 총 노선 및 주요 사업의 심의 및 의결
- 2)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
- 3)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의 논의
- 4) 본회의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
- 5) 본회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의 탄핵 소추
- 6) 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의 소환권
- 7) 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의 파면 요구
- 8) 학칙 개정의 건의
- 9) 기타 간학대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

## 제26조 (권한)

- 1)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간호대학운영위원회, 반운영위원회, 집행위원회에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2) 간호대학생총회 소집과 총 투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.

## 제27조 (안건 상정)

- 1) 의장 또는 간호대학운영위원회는 3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.
- 2) 재적 대표자 1/5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- 3) 회원 4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
## 제28조 (의결)

- 1) 재적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회하고, 참석 대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2) 제25조 5항의 경우 재적 대표자 1/3 이상의 발의와 참석 대표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) 토론 및 의결에 관해서는 개회 직후 통과 안건으로 다룬다.

# 5장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

## 제29조 (임무 및 권한)

- 1) 학생회장은 간호대학생총회를 대표하여 간호대학생총회,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, 간호대학운영위원회,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2) 학생회장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간호대학장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.
- 3) 학생회장은 예산의 집행과 간학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.
- 4) 학생회장은 기타 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5)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6)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.

### 제30조 (임기)

- 1)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당선 연도 12월 1일로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 (단, 다음해 선거가 성사되지 못할 시 이전 간호대학생회장은 선거 무산 이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소집을 할 수 있다.)
- 2)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중임(重任)할 수 있다. (단, 연임을 위한 찬반 투표는 금한다.)

### 제31조 (선출)

- 1)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은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.
- 2)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이 동시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 각각의 권한대행을 간호대학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- 3)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 모두의 유고 및 사퇴 시 잔여 임기가 100일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
### 제32조 (신분 보장)

선출된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은 학생총회, 총 투표에 의한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다.

## 6장 간호대학운영위원회

### 제33조 (위치)

간호대학운영위원회(이하 간운위)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.

### 제34조 (구성)

- 1) 간운위의 구성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간호대학생 대표자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- 가.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
  - 나. 반 대표자, 반 부대표자, 동아리 연합회장 (단, 동아리 연합 부회장이 있는 경우 포함.)
  - 2) 단위별 의결권은 한 표로 한다. (단,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의결권은 중복될 수 없다.)

### 제35조 (의장)

간운위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,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### 제36조 (업무 및 권한)

- 1) 간학대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수임
- 2) 학생회비의 심의 조정
- 3) 본회 제반 사업 계획안의 심의 조정
- 4) 본회 예산안 심의 조정
- 5) 본회 결산안 심의 조정
- 6) 집행위원회 업무 집행의 조정
- 7) 본회의 회칙 개정 발의
- 8) 선거시행세칙 개정 발의
- 9) 간학대회 소집 요구와 본회의 회원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 심의
- 10) 간학대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의결
- 11) 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 임면에 대한 동의 및 파면에 대한 요구, 소환권

### 제37조 (소집)

- 1) 정기회의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간운위에서 정한다.
- 2) 임시회의는 학생회장이 요구 또는 간호대학운영위원 1/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- 3) 방학 기간 중 회의는 의장이 임의로 정한다.

### 제38조 (의결)

간운위는 재적 단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7장 반학생총회

### 제39조 (지위)

반학생총회는 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.

### 제40조 (구성)

반학생총회는 본회의 해당 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41조 (업무 및 권한)

- 1) 반학생총회는 반 회원 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, 결정한다.
- 2) 반학생총회는 해당 반 대표자, 반 부대표자의 탄핵 결정권을 가진다.

### 제42조 (의장)

반학생총회의 의장은 반 대표자가 맡는다. (단, 반 대표자 탄핵 소추 및 심판 시에는 본회 반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공포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.)

### 제43조 (소집)

- 1) 반학생총회는 반운영위원회의 요구 또는 구성원 1/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반 대표자가 반드시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반 대표자가 반학생총회를 독자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.)
- 2) 반학생총회의 소집과 상정안건은 집회 7일 전에 의장이 공고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집회 3일 전에 소집과 상정안건을 공고할 수 있다.)

### 제44조 (의결)

- 1) 반학생총회는 해당 반 회원의 1/8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.
- 2) 반 대표자, 반 부대표자의 탄핵심판에 관한 반학생총회는 반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진행 아래,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) 반학생총회를 할 수 없을 시에는 반 총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.

### 제45조 (탄핵심판)

- 1) 반학생총회는 반 대표자 또는 반 부대표자가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반 대표자 또는 반 부대표자를 탄핵할 수 있다.
- 2) 반학생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시 반 대표자 또는 반 부대표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
- 3) 탄핵심판을 위한 반학생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4) 반학생총회에서 반 대표자 또는 반 부대표자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경우, 반학생총회를 재소집하여 심판에 착수한다.
- 5) 탄핵심판에서 피소추인은 항변할 권리와 토론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.
- 6) 탄핵심판에서 소추인과 피소추인은 사안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증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증인은 탄핵심판장에 출석해 증언

한다.

7) 모든 항변과 토론이 끝난 후 표결에 부친다.

## 8장 반 총 투표

### 제46조 (정의)

반 총 투표라 함은 해당 반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안건에 대한 의사를 투표로 묻는 방식이다.

### 제47조 (업무 및 권한)

- 1) 반 총 투표의 목적은 해당 반의 모든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실현화하는 것이다.
- 2) 반 총 투표의 권한은 해당 반의 모든 회원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방식이다.

### 제48조 (반 투표관리위원회 정의 및 구성)

- 1) 반 투표관리위원회의 정의는 반 총 투표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.
- 2) 반 투표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제60조(구성)에 명시된 구성원으로 한다.
- 3) 반 투표관리위원회는 반 총 투표를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며 반 총 투표와 관련된 업무 종료 시 자동으로 해체된다.
- 4) 반 투표관리위원장은 반 대표자가 맡는다, (단, 반 대표자 탄핵 소추 및 심판 시에는 본회 반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공포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.)

### 제49조 (진행 방식)

- 1) 투표의 진행방식은 반대표자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. 또한, 새롭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오면 위의 제48조(반 투표관리위원회 정의 및 구성)에서 그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.
- 2) 투표의 안건은 투표하기 최소 7일 전에 반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
- 3) 투표의 기간은 3일로 하며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에는 반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1회에 한해 2일을 연장할 수 있다.
- 4) 반 총 투표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반 총 투표의 안건에 대해서 공지하고 반 총 투표에 관한 게시물을 만들어 해당 반의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
### 제50조 (예산 및 감사)

- 1) 반 총 투표의 예산은 학생회비로 집행한다.
- 2) 반 투표관리위원장은 투표시행 14일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간운위에 제출 후 심의를 받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.
- 3) 반 투표관리위원장은 투표종료 후 다음 간운위에 결산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간운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(단, 다음 간운위가 7일 이내에 없을 시 학생회장은 임시 간운위를 소집해야 한다.)
- 4) 회원의 1/8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, 결산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해명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 (단, 간운위의 요구가 있을 시에도 이에 준한다.)

### 제51조 (결과의 공고)

- 1) 반 총 투표가 완료되면 반 총 투표의 결과를 1일 이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
- 2) 반 총 투표가 성사되었을 시 결과에 따른 후속결과도 30일 이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

## 9장 반 대표자, 반 부대표자

## 제52조 (임무 및 권한)

- 1) 반 대표자는 반학생총회, 반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2) 반 대표자는 각 반의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3) 반 부대표자는 반 대표자를 보좌하며 반 대표자의 유고 및 결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
- 4) 반 부대표자는 반 대표자가 위임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.

## 제53조 (임기)

- 1) 반 대표자와 반 부대표자의 임기는 매년 당선 연도 12월 1일로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 (단, 선거가 성사되지 못할 시 이전 반 대표자는 선거 무산 이후 구성된 반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소집을 할 수 있다.)
- 2) 반 대표자와 반 부대표자는 중임(重任)할 수 있다. (단, 연임을 위한 찬반 투표는 금한다.)

## 제54조 (선출)

- 1) 반 대표자, 반 부대표자는 각 반의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- 2) 반 대표자, 반 부대표자가 동시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반 대표자, 반 부대표자 각각의 권한대행을 반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- 3) 반 대표자, 반 부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간호대학 반 대표자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.

# 10장 학년 대표자, 학년 부대표자

## 제55조 (임무 및 권한)

- 1) 학년 대표자는 학년별 각 반의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. (단, 재정을 포함한 필요한 업무는 학년별 각 반 실정에 맞게 학년 대표자에 의하여 결정된다.)
- 2) 학년 부대표자는 학년 대표자를 보좌하며 학년 대표자의 유고 및 결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
- 3) 학년 부대표자는 학년 대표자가 위임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.

## 제56조 (임기)

- 1) 학년 대표자와 학년 부대표자의 임기는 선거가 진행된 해당 학기 18주차 시작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학기 17주차 말일까지로 한다. (단, 1학년 1학기의 경우 학년 대표자 선거시행세칙의 부칙의 제4조 2항을 따른다.)
- 2) 학년 대표자와 학년 부대표자는 중임(重任)할 수 있다. (단, 연임을 위한 찬반 투표는 금한다.)

## 제57조 (선출)

- 1) 학년 대표자, 학년 부대표자는 학년별 각 반의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- 2) 학년 대표자, 학년 부대표자 모두 유고 및 결위 시 권한 대행 여부와 대행자 선출 방식에 대해 반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.
- 3) 학년 대표자, 학년 부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간호대학 학년 대표자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.

## 제58조 (탄핵심판)

- 1) 학년 대표자 또는 학년 부대표자가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학년 대표자 또는 학년 부대표자는 탄핵될 수 있다.
- 2) 해당 단위 회원의 1/4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해당 단위 회원 1/3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회하며, 참석 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한다.
- 3) 해당 단위 회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시 학년 대표자 또는 학년 부대표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

- 4) 해당 단위 회원으로 구성된 탄핵심판을 위한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5) 해당 단위의 회의 의장은 반 대표자가 맡는다. (단, 반 대표자가 해당 단위의 회원일 경우 의결권이 부여된다.)
- 6) 해당 단위 회원의 회의에서 학년 대표자 또는 학년 부대표자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경우, 해당 단위 회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재소집하여 심판에 착수한다.
- 7) 탄핵심판에 피소추인은 항변할 권리와 토론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.
- 8) 탄핵심판에서 소추인과 피소추인은 사안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증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증인은 탄핵심판장에 출석해 증언한다.
- 9) 모든 항변과 토론이 끝난 후 표결에 부친다.

## 11장 반운영위원회

### 제59조 (위치)

반운영위원회(이하 반운영위)는 본회의 운영 기구이다.

### 제60조 (구성)

1) 반운영위의 구성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간호대 학생 대표자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가. 반 대표자, 반 부대표자

나. 학년 대표자, 학년 부대표자

2) 단위별 의결권은 한 표로 한다. (단, 반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의결권은 중복될 수 없으며, 임시 학년 대표자의 경우 발언권만 부여되고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.)

### 제61조 (의장)

반운영위의 의장은 반 대표자가 맡으며,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### 제62조 (업무 및 권한)

- 1)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
- 2) 간운영위에서의 보고안건과 논의안건을 상정 및 검토
- 3) 반 총 투표 요구와 관련해 논의

### 제63조 (소집)

- 1) 정기회의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반운영위에서 정한다.
- 2) 임시회의는 반 대표자가 요구 또는 반운영위원 1/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- 3) 방학 기간 중 회의는 의장이 임의로 정한다.

### 제64조 (의결)

반운영위는 재적 단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12장 간호대학 동아리 연합회

### 제65조 (구성)

본회의 회원으로만 구성된 모든 동아리의 회원으로 한다.

### 제66조 (간호대학 동아리 연합회장)

- 1) 동아리 연합회의 회장은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. (단, 동아리 연합회의 부회장도 동일한 방식으로 호선한다.)
- 2) 동아리 연합회의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간호대학운영위원이 된다. (단, 동아리 연합회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 포함.)

### 제67조 (활동)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호대학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## 13장 집행위원회

### 제68조 (위치)

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.

### 제69조 (구성)

- 1)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과 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, 각 집행차장으로 구성한다.
- 2) 각 집행국장은 간호대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여 학생회장이 임명한다.

### 제70조 (임기)

집행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연도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.

### 제71조 (업무 및 권한)

- 1) 본회 사업 및 예산 집행
- 2) 본회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, 결산서 작성
- 3) 기타 집행위원회의 업무

### 제72조 (부서 및 기능)

집행위원회에는 제반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부서를 두고 그에 맞는 기능을 관장한다.

## 14장 재정

### 제73조 (회계 연도)

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말일까지로 한다.

### 제74조 (회비)

- 1) 본회의 회비는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하여 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간학대회에서 확정된다.
- 2) 본회의 회비는 입학한 첫해에 총 4년의 회비를 일괄 납부한다.
- 3) 본회의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 업무는 본회에서 담당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행한다.
- 4) 회계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 내에 이를 담당하는 집행국을 두며, 이는 해당 집행국의 국장이 관리한다.
- 5) 집행위원회는 회비의 운용에 있어 반드시 장부에 기록토록 하며, 영수증이나 명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회비의 사용처, 사용금액 등을 상세히 명시토록 한다.
- 6) 중도 납부 시 (1인당 총 회비\*해당 연도를 포함한 남은 학년 수/4)를 납부한다.
- 7) 전과, 자퇴 등의 사유로 인해 본회 활동에 참여가 어려울 시에는 (1인당 총 회비\*해당 연도를 제외한 남은 학년 수/4)를 환불한다.

## 제75조 (결산안 심의)

집행위원회에서 회비 사용 후 결산안을 작성하여 간학대회에서 심의를 받는다.

## 제76조 (감사)

- 1)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계 내역을 상시 열람할 수 있다.
- 2) 간운위는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간운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3) 간운위 감사 결과 학생회비 횡령 및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실무 책임자와 예산을 집행한 자가 공동 책임을 진다. 다만, 손괴의 경우 책임자의 과실에 비하여 책임 비용이 과중하다고 간운위가 판단할 시 간학대회에서 비용 분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- 4) 감사에 필요한 서류 또는 내용은 간운위에서 결정한다.

# 15장 선거

## 제77조 (피선거자격)

- 1) 본회 회원인 자
- 2) 학생회장은 4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, 부학생회장은 2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
- 3)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이 한 단위로 선거에 출마
- 4) 회원 15%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(단, 각 반 별도로 각각 정원의 15% 이상.)

## 제78조 (선거 시기)

- 1)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 선거는 임기 연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한다. (단,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.)
- 2)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선거직 임원은 각각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.

## 제79조 (선거관리위원회)

- 1)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간호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선관위)를 둔다.
- 2) 선관위는 간호대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되며 학생회장이 선관위원장, 부학생회장이 부위원장이 된다. (단, 필요 시 선관위에서 추천된 1인이 의결을 통해 선관위원장이 된다. 또한, 선관위원장 또는 부선관위원장이 공석이 되기 전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이 의결을 진행한다.)
- 3) 선관위는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의 선거일을 늦어도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.
- 4) 선관위는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간호대학생회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.
- 5) 선관위는 선관위가 구성된 후부터 간호대학생회장단의 당선 확정 공고 전까지 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직무를 대신한다.
- 6) 선거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장단과 집행위원회의 사업 진행, 의견 표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7) 간호대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회의 특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관위는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- 8) 선거에 의한 이익제기는 개표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.

## 제80조 (선거시행세칙)

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간호대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.

## 제81조 (임기)

- 1)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제30조(임기)의 임기를 따른다.

- 2) 반 대표자 및 반 부대표자는 제53조(임기)의 임기를 따른다.
- 3) 학년 대표자 및 학년 부대표자는 제56조(임기)의 임기를 따른다.
- 4) 간호대학 동아리 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간호대학 동아리 연합회 회칙을 따른다.

## 16장 회칙 개정

### 제82조 (발의)

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.

- 가.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표자 1/5 이상의 발의
- 나. 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발의
- 다. 회원총수의 1/15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발의

### 제83조 (의결)

회칙 개정이 발의 시 간학대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,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에 간학대회를 열고 재적 대표자 과 반수 출석과 출석대표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84조 (공포)

간학대회 의장은 의결 3일 이내에 공포한다.

## 17장 비상대책위원회

### 제85조 (정의)

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대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마련된 매년 정기적인 선거기간에 선거가 무산되어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간운위에 준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.

### 제86조 (구성)

구성원은 간호대학 학생회칙 제34조(구성)에 준하여 구성되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구성원에서 제외한다.

### 제87조 (업무 및 권한)

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대학 학생회칙 제36조(업무 및 권한)에 언급된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.

### 제88조 (소집과 의결)

간호대학 학생회칙 제37조(소집)와 제38조(의결)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.

## 18장 비상대책위원장, 부비상대책위원장

### 제89조 (정의)

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들의 투표로 뽑힌 위원회의 대표이다.

### 제90조 (업무 및 권한)

간호대학 학생회칙 제29조(업무 및 권한)에 의거하여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. (단, 그 임무와 권한을 단독으

로 행사할 수 없고,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임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)

### 제91조 (선출)

- 1)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비상대책위원들 중 4학기 이상을 필한 한 명으로 구성된다.
- 2) 부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비상대책위원들 중 2학기 이상을 필한 한 명으로 구성된다.
- 3) 비상대책위원장과 부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은 별도로 진행되며, 비상대책위원들의 추천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2인 이상의 후보가 나온 경우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선정한다. (단, 최다 득표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필한다.)
- 4) 단일 후보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필한다.
- 5) 과반의 찬성이 안 될 경우, 후보자 추천부터 다시 시행한다.
- 6) 비상대책위원장, 부비상대책위원장이 자격을 상실할 경우 재선출을 진행한다.

## 19장 비상대책위원회 재정

### 제92조 (회계 연도)

매년 12월 1일부터 당해 11월 말일까지로 한다.

### 제93조 (회비)

- 1) 본회의 회비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간학대회에서 확정된다.
- 2) 본회의 회비는 입학한 첫 해에 총 4년의 회비를 일괄 납부한다.
- 3) 본회의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업무는 본회에서 담당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비상대책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행한다.
- 4) 회계 업무 담당자는 부비상대책위원장이며, 회계 업무를 담당 및 관리한다. (단, 필요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인준한 회계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)
- 5) 제93조 4항에 명시된 회계 업무 담당자는 회비의 운용에 있어 반드시 장부에 기록토록 하며, 영수증이나 명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회비의 사용처, 사용금액 등을 상세히 명시토록 한다.
- 6) 중도 납부 시 (1인당 총 회비\*해당 연도를 포함한 남은 학년 수/4)를 납부한다.
- 7) 전과, 자퇴 등의 사유로 인해 본회 활동에 참여가 어려울 시에는 (1인당 총 회비\*해당 연도를 제외한 남은 학년 수/4)를 환불한다.

### 제94조 (감사)

- 1) 다음 학생회가 당선이 될 경우 해당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당선된 학기의 간학대회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회계감사를 시행해야 한다.
- 2) 다음 학생회가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, 다음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회계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.
- 3) 회계감사 결과 학생회비 횡령 및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실무 책임자와 예산을 집행한 자가 공동 책임을 진다. 다만, 손괴의 경우 책임자의 과실에 비하여 책임 비용이 과중하다고 회계주체가 판단할 시 간학대회에서 비용 분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
### 제95조 (회계감사 소집)

- 1) 회계 감사의 주체는 제76조(감사)를 따른다.
- 2) 회계 감사는 시행일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3) 회계 감사 내용 공표는 감사 시행일 다음날로 한다.

## 20장 반 비상대책위원회

### 제96조 (정의)

반 비상대책위원회는 반 대표자 선거시행세칙에 마련된 매년 정기적인 선거기간에 선거가 무산되어서 반 대표자와 반 부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았을 때 반운위에 준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.

### 제97조 (구성)

구성원은 간호대학 학생회칙 제60조(구성)에 준하여 구성되나 반 대표자와 반 부대표자는 구성원에서 제외한다.

### 제98조 (업무 및 권한)

반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대학 학생회칙 제62조(업무 및 권한)에 언급된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.

### 제99조 (소집과 의결)

간호대학 학생회칙 제63조(소집)와 제64조(의결)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.

## 21장 반 비상대책위원장, 반 부비상대책위원장

### 제100조 (정의)

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반 비상대책위원들의 투표로 뽑힌 위원회의 대표이다.

### 제101조 (업무 및 권한)

간호대학 학생회칙 제52조(업무 및 권한)에 의거하여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. (단, 그 임무와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, 반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임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)

### 제102조 (선출)

- 1) 반 비상대책위원장은 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반 비상대책위원들 중 4학기 이상을 필한 한 명으로 구성된다.
- 2) 반 부비상대책위원장은 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반 비상대책위원들 중 2학기 이상을 필한 한 명으로 구성된다.
- 3) 반 비상대책위원장과 반 부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은 별도로 진행되며, 반 비상대책위원들의 추천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2인 이상의 후보가 나온 경우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선정한다. (단, 최다 득표자는 반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필한다.)
- 4) 단일 후보일 경우 반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필한다.
- 5) 과반의 찬성이 안 될 경우, 후보자 추천부터 다시 시행한다.
- 6) 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또는 반 비상대책위원장, 반 부비상대책위원장이 자격을 상실할 경우 재선출을 진행한다.

## 부칙

### 제1조 (발표)

본 회칙은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생된다.

## 제2조
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간운위의 의결에 따른다.

## 제3조 (개정)

- 1) 본 개정회칙은 2016년 06월 02일 개정하여 2016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- 2) 본 개정회칙은 2017년 04월 04일 개정하여 2017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- 3) 본 개정회칙은 2018년 04월 03일 개정하여 2018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- 4) 본 개정회칙은 2018년 10월 02일 개정하여 2018년 10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- 5) 본 개정회칙은 2019년 06월 05일 개정하여 2019년 06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- 6) 본 개정회칙은 2019년 10월 04일 개정하여 2019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- 7) 본 개정회칙은 2020년 06월 02일 개정하여 2020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- 8) 본 개정회칙은 2020년 09월 22일 개정하여 2020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9) 본 개정회칙은 2021년 06월 01일 개정하여 2021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- 10) 본 개정회칙은 2021년 08월 10일에 개정하여 2021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11) 본 개정회칙은 2021년 10월 05일에 개정하여 2021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- 12) 본 개정회칙은 2022년 05월 31일에 개정하여 202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13) 본 개정회칙은 2022년 10월 04일에 개정하여 2022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- 14) 본 개정회칙은 2023년 02월 07일에 개정하여 2023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- 15) 본 개정회칙은 2023년 05월 16일에 개정하여 2023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16) 본 개정회칙은 2023년 09월 14일에 개정하여 2023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 제4조 (특수 상황)

- 1) 특수 상황이라 함은 감염병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원의 집합 또는 대면 형태로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.
- 2) 특수 상황에는 간운위의 의결을 통해 회칙에 제약받지 않고 결정을 할 수 있다.
- 3) 전항의 경우, 회원에게 온라인을 통해 해당 조항과 의결과정을 포함한 회의록을 기재하여 1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.
- 4) 결정사항과 관련된 공지에 대해 60인 이상의 이의 제기 또는 해명 요구가 있을 시, 7일 이내에 해명문을 온라인 과 오프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.